

문화방송 노조특보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공영방송 파괴 주범들끼리 '돈 잔치'

안광한, 퇴직금 3억 5천 만원에 추가로 '수익 원' 전관예우

임원진 보수 5%, 성과급 150% 한도 인상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의 파렴치 행위가 끝을 모른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 안광한 전 사장을 위해 퇴직금과 별도로 수익 원대 전관예우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임원들 보수 한도가 5%, 성과급 한도가 150% 인상됐다. 경쟁력 추락과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는커녕 자기들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김장겸 사장 개인 돈으로 개인과 자문 계약을 맺는다는 뜻인가?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회는 안전 사장에 대한 특별퇴직공로금 5천만 원 지급도 의결했다. 결국 안광한 씨는 3년 재직 기간 사장 월급 외에도, 퇴직연금 3억 여 원, 특별퇴직공로금 5천만 원에 연간 2억 원이 넘는 자문료까지 챙겨가게 되는 것이다.

“공로금을 오히려 더 줘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자 방문진은 “사전에 방문진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뒤 (전관예우를) 집행하라”고 회사 측에 권고했다.

말문이 막히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등 임원 9명의 보수 한도를 5%, 성과급 한도를 150%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임원 9명을 위해서 회사 예산 40억 원이 책정됐다.



이은우 MBC 경영본부장은 어제(16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안광한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유기철, 이완기 이사는 “퇴직 후 자문료 월 1천만 원에 차량 운영비와,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까지 월 최소 2천만 원, 연 최소 2억 4천만 원을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지원하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본부장은 “자문위원 위촉은 김장겸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의 계약사항”이라며 “지원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영본부장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회사 돈으로 연 수 억 원의 자문료를 지원하는데,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김장겸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인가?

안광한 한 사람에게만 올 한해 6억 원이다. 자문 계약 기간에 따라 수 억원이 추가될 수도 있다.

안광한이 어떤 인물인가? 2012년 파업 당시 MBC 부사장 겸 인사위원장으로 김재철을 보좌하면서 해고와 정직 등 각종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를 진두지휘했다. 2013년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으로 잠시 옮겨갔다가 2014년 MBC 사장으로 돌아와서는 ‘박근혜 방송’ ‘청와대 방송’을 구축하며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뉴스데스크 시청률을 2%대까지 추락하게 만든 공영방송 농단의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권혁철, 이인철, 유의선 이사 등은 안전 사장에 대해 “경영 평가 등 객관적 지표가 훌륭하다”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며 사장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당초 이사회에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이 요구한 한도 인상안은 ‘보수 10%, 성과급 300%’였다. 그러나 “광고 수익 감소 등 위기 상황에서 경영진이 허리띠를 졸라매진 못할 망정, 자기들 보수 인상만 신경쓰면 되겠냐”는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지적에 따라 그나마 한도가 절반으로 깎였다.

2012년 파업 이후 MBC에서 지난 5년 동안 사원들의 임금은 거의 동결 상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추락, 잇따른 보도 참사, 인력 유출, 경영 실패의 주범들이 자기들의 보수 인상에만 골몰하고 끼리끼리 챙겨주는 상황. 김장겸과 안광한은 단지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의 소유물로 갖다 바친 부역자일 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아무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퍼가는 심각한 모델 해저드를 보여주고 있다.

퇴임 사장 '자문' 계약은 편법 퍼주기

어제 (1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안광한 전 사장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 계획이 드러났다.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안 전 사장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 여부와 처우 등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안 전 사장에게도 자문위원 위촉의 형식으로 막대한 ‘전관예우’가 베풀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김재철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거액의 편법 지원을 추진했다. 2010년 3월 20일자 회사 기안서에 따르면 엄기영 전 사장은 퇴임 이후 1년간 무려 2억 5,177만원에 상당하는 ‘예우’를 제공받았다. 자문사례비 명목으로 월 1천만 원, 별도의 활동비 월 300만 원을 받았다. 차량 렌트비 2,080만원, 운전기사 도급료 5,400만 원, 주유비와 주차비 월 150만원씩 1,950만 원 등도 주어졌다. 심지어 문화카드비(147만원)와 휴대전화 사용료(120만원)에 건강검진비 200만 원까지 추가됐다.

주주총회 의결 피하기 위한 꼼수

엄기영 전 사장 1년간 2억5천여만 원 챙겨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은 방문진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전임 사장에게 퇴임 직후 주어지는 ‘예우’는 정해진 퇴직금 외에 거액의 뒷돈을 얹어주는 행위이다. 전임 사장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자문료’도 방문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상법 제383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퇴직 사장을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방문진 승인 절차를 회피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안광한 사장은 퇴임과 동시에 3억 원이 넘는 퇴직금과 5천만 원의 특별퇴직공로금을 받는다. 여기에 수억 원대의 ‘과잉 전관예우’가 추가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별도의 ‘자문위원’ 채용 절차를 밟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전관예우’는 재직 당시 연봉과 거의 맞먹는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하며 급여만 받아 챙기는 셈이다. 엄기영 전 사장의 기안서에는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경영 향상에 필요한 종합 경영 자문’ 등을 받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엄 전 사장이 무슨 자문을 했는지는 아무런 기록조차 없다. 이는 임원들이 끼리끼리 회사 돈을 챙겨가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회사는 안광한 전 사장이 ‘자문’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얼마를 챙겨가는 것인지를 철저히 기밀에 붙이고 있다. 일반 임직원들의 처우와 업무 내용 등은 사실상 공개돼 있는데, 유독 ‘자문’에 대해서만 기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거액의 자문료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사법부 판결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MBC에서 퇴직한 후 받지 못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약 3억 원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당시 “MBC는 전직 사장들에게 예외 없이 퇴임 후 1년간 고문으로 위촉해 경영 조언을 받고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가 퇴임 사장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퇴임 사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자문료, 활동비 등 명목이 어떻든 이는 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야당 추천 이사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방문진은 관리 감독권을 발동해 사전 보고를 받기로 했다. 방문진은 관리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이 없는 편법 돈 챙기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노동조합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으로 이어지는 MBC 파국의 주범들과 그 하수인들이 국민의 자산인 MBC의 돈을 마음대로 빼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예우 방안

가. 역할 : 경영관련 자문 등 담당 (비상근)

나. 기간 : 1년 (2010년 3월 ~ 2011년 2월)

다. 자문내용

-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자문
- 경영향상에 필요한 종합 경영 자문 등

라. 처우

- 자문사례 : 年 1.2억 (기본연봉의 50% 선)
- 활동비 : 月 300만원
- 차량 및 기사 제공
- 기타 사무실, 복리후생(문화카드, 건강검진, 핸드폰) 제공

3. 고문료 지급 방식

- 인사시스템 등록, 매월 25일 지급 (갑근세 원천징수, 4대보험 처리)

4. 소요예산(년간) : 251,770,000원

가. 자문사례 : 120,000,000원 (월 1천만원x12개월)

나. 활동비 : 36,000,000원 (월 300만원x12개월)

다. 차량렌트비 : 20,800,000원 (월 160만원x13개월)

라. 기사도급료 : 54,000,000원 (월 450만원x12개월)

마. 주유비, 주차비 : 19,500,000원 (월 150만원x13개월)

바. 문화카드 : 1,470,000원

※ 건강검진비 (200만원), 통신비 (120만원) 기존예산 사용.

※ 기사는 회사 도급직 배정. 끝.